

점 자 법 시 행 규 칙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 이유

「점자법」이 개정, 시행(법률 제20359호, 2024. 2. 27., 일부개정,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점자교원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 나. 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안 제4조)
- 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안 제5조)
- 라.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안 제6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

점자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자교원 자격심의위원회) 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점자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점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시각장애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점자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과 점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 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가. 다음 세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1)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 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2)의 경우: 영 제7조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3)의 경우: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으로서의 점역·교정사 자격증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점자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점자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과정의 소개
2. 교과목 개요
3. 교수요목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영문) ※ 여권에 적힌 성명을 적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5×4.5cm)	
	②생년월일			③국적			
	④주소 ※자격증 발급 시 수령할 수 있는 주소(우편번호 포함)						
	⑤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⑥전자우편				
	⑦신청 등급		⑧점자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증 번호:				
	⑨양성 과정	기간 . . . ~ . . .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 시간	
⑩점자 교육 근무 경력	기간		근무 기관		직위(직급)		발령자
	. . . ~ . . .						
	. . . ~ . . .						

「점자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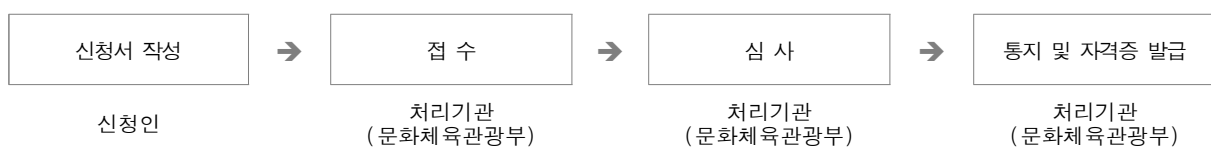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1.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가. 나를 모두 제출 가. 점자 교육 경력 증명서 1부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점자능력 검정시험 고급 등급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으로서의 점역·교정사 합격증 1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가, 나를 모두 제출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점자 교육 경력 증명서 1부 2) 영 제7조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으로서의 점역·교정사 합격증 1부 나.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④란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므로, 주소(우편번호 포함)를 정확히 적습니다.
- ⑧란부터 ⑩란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⑩란의 직위(직급)란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발행 기관 관리 문서 번호

점자 교육 경력 증명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 기관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강의 경력	연도	담당 과목명	강의 시간	강의 기간(연월일)	비고
강의 시간 합계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점자 교육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 직인이 없는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발급 기관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이수 내용	연도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영역	영역별 이수 시간
					점자 및 어문규범	
					점자 교육론	
					점자 교육실습	
총이수 시간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 직인이 없는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우편번호 포함)				
자 격	등	급	[] 1급 [] 2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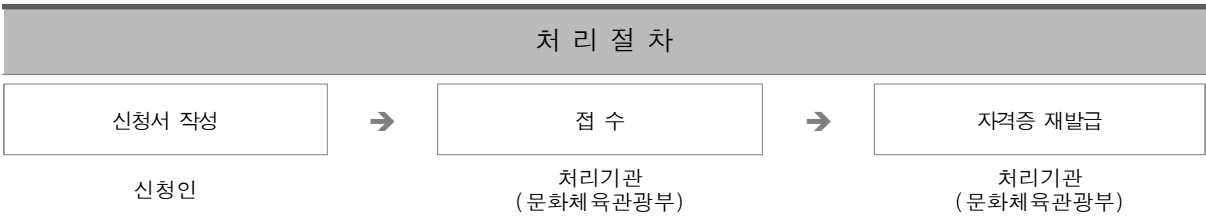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자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5천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점자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신청 기관				과정명			
과정 유형	[] 주 [] 야 [] 간 [] 단 [] 기 [] 방 [] 학 [] 기 [] 타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일
모집 정원				교육 기간			
수업 일수/ 주당				수업 시간대			
주 소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번호			

영역	교과목	시간	비고	영역	교과목	시간	비고
점자 및 어문규범				점자 교육론			
점자교육 실습							
총교과목 수	(개)			총이수 시간	(시간)		

첨부서류: 1. 양성 과정의 소개 1부
2. 교과목 개요 1부
3. 교수요목 1부

년 월 일

신청인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직인이 없는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38